

제289회 미추홀구의회 (임시회)
2025.7.15.(화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
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김오현 의원 대표 발의】

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오세진]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위

○ 발 의 자: 김오현 의원 외 7명

※ (공동발의자) 이수현, 김영근, 이관호, 박수연, 김재원, 황숙경, 양정희 의원

○ 발의일자: 2025. 6. 20.

○ 심사일자: 2025. 7. 15.

2. 제안이유

○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 현실에 맞는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(안 제4조제2호)

4. 관련근거

○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○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5. 검토의견

○ 개정 필요성 검토

- 2024년 6월 1일 시행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일부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 현장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 이에 따라 상위 훈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를 일치시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임.

*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[시행 2024. 6. 1.]

- 개정 이유

지방자치단체 현장 수요 반영, 시대 변화에 맞도록 규정 합리화 및 지방 재정관리시스템 기반 업무처리 방식 개선

- 주요내용

임차료 선금 개선,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명확화 및 조문 정비 등

<법제처 제공>

○ 조문 검토 및 의견

- 안 제4조제2호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세출예산 집행기준(별표 2)을 반영하여 기존 문구를 수정*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

* (기존) 심야시간(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), 휴일, 사용자의 자택근처
(수정) 비정상시간대(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), 법정공휴일 및 토·일요일,
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

#. 참고. 관련법령

□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제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의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[별표 2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

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[별표 2]

4. 업무추진비(203목)

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(출장명령서 등)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.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, 장소, 목적, 집행대상,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(1) 법정공휴일 및 토·일요일

(2)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(관련 근무지란 시·도의 경우 해당 시·도, 시·군·구의 경우 해당 시·군·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·군·구를 말함)

(3) 비정상시간대(23시~다음날 6시)

(4)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